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04
----------	-------

발의연월일 : 2025. 12. 3.

발 의 자 : 윤후덕·박민규·한정애  
박 정·홍기원·이주희  
조정식·박지원·임오경  
김주영·정일영·임미애  
김정호·김영진·강선우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총포 및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용도에 따라 총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보관해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 총기사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허가관청의 재량적인 판단으로 보관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현행법은 허가관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살상 능력을 지닌 총포의 보관해제 여부를 행정적 판단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포 보관해제에 관한 허가관청의 재량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과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하에 제한적으로 보관해제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총포류로 인한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치정보수집”을 “보관해제 거부, 위치정보수집”으로 한다.

③ 허가신청은 제2항에 따른 보관해제 신청이 다음 각 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는 경우
2.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의2(총포의 보관) ① · ② (생략)</p> <p>③ 허가신청은 제2항에 따른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그 밖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p> <p>④ 보관대상이 되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 보관 기간 및 장소, 보관 및 보관해제의 절차, <u>위치정보수집</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의2(총포의 보관)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허가신청은 제2항에 따른 보관해제 신청이 다음 각 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는 경우</u></li> <li>2. <u>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u></li> <li>3. <u>그 밖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u></li> </ol> <p>④ ----- ----- ----- -----<u>보관해제 거부, 위치정보수집</u>----- -----.</p>